

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: 10일
구분	[] 공고 [] 미공고		
신청인	노동조합명	대표자	
	소재지		
	(전화번호) (팩스번호)		
피신청인	사업장명	대표자	
	소재지		
	(전화번호) (팩스번호)		
공고 또는 미공고 과반수 노동조합	노동조합명	종사근로자인 조합원수 명	
	과반수노동조합 통지일	공고일	

신청 취지 및 이유(별지 작성 가능)

사용자가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 제14조의7제2항에 따른 과반수노동조합을 공고하지 않거나 공고된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가 있어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9조의2제7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7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〇〇지방노동위원회 귀하

첨부서류	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